

2023년도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25.(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한승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82)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39건(안건번호 제2023-24330호~2616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333호~24335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336호~24392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4393호~24418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의 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4419호~24439호는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37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42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9538호~996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42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62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영상 저작물의 자막을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는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제2023-24333호~2433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만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ㅎㅎㅎ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E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4336호~2439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만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ㅇㅇㅇ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안전번호 제2023-24391호는 지난번 제2023-80회 전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출판저작물 구매희망글과 유사함. 저는 본건에 대하여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가결 의견이며, 당시 안전 또한 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오진해 전문위원: 당시 12분 출석위원 중 가결의견 6인, 부결의견 6인으로 가결정족수인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됨.
- A 위원: '구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얼마나 불법을 조장하는지에 대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전체위원회 안건의 경우 본건에 비하여 불법성을 바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저는 당시 안전 또한 본건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4336호~24392호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336호~2439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4393호~2441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4393호~2441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393호~2441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419호~24439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24419호~2443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4419호~2443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440호~2616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

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나이트 에이전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476호
(‘나이트 에이전트’)는 2023.03.23.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300포인트에 판매중임.

(‘오디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5935호(‘오디션’)은
2023.04.19.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00포인트에 판매중임.

(‘호그와트 레거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6107호
(‘호그와트 레거시’)은 2023.02.11. 발매한 PC 게임으로 웹하드에서 1,930포인트에 판매중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24440호~2616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4440호~2616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24330호~24332호 제2023-24333호~24335호, 제2023-24336호~24392호, 제2023-24393호~24418호, 제2023-24419호~24439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24440호~26168호

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538호~9966호(순번 1번~429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9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2.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한승원

위원 홍지만